

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
제 2 차 본 회 의 (2017. 6. 26.)

# 조례안·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**산업건설위원회**

# 목 차

1	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-----	3
3	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	5
4	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-	7
5	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	9
6	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-----	11
7	거창군 가로수 조성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3
8	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5
9	거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-----	17

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안  
[ 심 사 보 고 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17. 6. 2.
- 나. 발 의 자: 강철우 의원 대표발의(김종두, 표주숙, 박희순, 변상원, 이흥희, 최광열, 형남현, 이성복, 권재경, 김향란)
- 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제정이유

-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조·제2조)
- 나. 군수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3조·제4조·제5조)
- 다.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,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취약계층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17. 6. 2.
- 나. 발 의 자: 최광열 의원 대표발의(김종두, 강철우, 형남현, 이흥희, 권재경, 김향란)
- 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제정이유

- 「사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사도개설을 위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함.(안 제2조)
  - 사도의 구조를 「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리도(차선평폭 5.0미터, 길어깨 0.75미터)에서 농도(차선평폭 3.0미터, 길어깨 0.5미터) 이상의 도로 구조기준으로 완화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사도의 구조기준을 「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농도(차선평폭 3.0미터, 길어깨 0.5미터) 이상으로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6. 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개정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법제처 자치법규 권고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의 중복·재기재 사항을 삭제함.(중전 조례 제2조~제4조, 제8조·제9조·제11조·제13조)
- 나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정함.  
(안 제2조)
- 다.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(안 제3조·별표)
- 라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함

(안 제5조~제8조)

#### **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-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, 운용·관리 및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
- 법령의 중복·재기재 사항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#### 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#### 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 
지원 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6. 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제정이유

-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정함.(안 제2조)
- 나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정함.(안 제3조)
- 다.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정함.(안 제4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

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6. 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개정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과 설치 목적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명칭 변경함.(안 제1조 등)
- 나. 현장지휘관 규정 삭제함.(안 제2조제3호 등)
- 다.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목적 변경함.(안 제1조 등)
- 라.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 변경함.(안 제5조제3항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을 총괄·지휘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과 설치 목적 등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〔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6. 2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제정이유

- 거창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거창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- 나. 휴장일, 관람 및 운영시간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·제6조)
- 다. 체험료 및 이용료,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함.(안 제7조~제11조)
- 라. 행위 및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12조)
- 마.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.(안 제13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한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# 〔 거창군 가로수 조성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6. 2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개정이유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현행 가로수 위원회를 그 위임취지와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,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함.(안 제4조)
- 나. 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중복·재기재 사항을 삭제함.(안 제5조)
- 다. 법률 위임 없는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삭제함.(안 제14조제3항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

등을 정비하고,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 
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6. 2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을 신설하고,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로 위임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를 정함.(안 제2조제3호 단서)
- 나. 상위법 위배소지 조항 및 재기재 사항 삭제함.(안 제9조제5항 등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위임된

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상위법 위배소지 및 재기재 조항 등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[ 거창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 
심 사 보 고 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6. 2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제안이유

-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찾아오는 관람객과 주민들에게 목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, 각종 편의시설·전시실 등 목재문화체험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## 3. 위탁개요

- 시 설 명: 거창목재문화체험장
- 위 치: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4번지 일원(수승대관광지)
- 규 모: 건축면적 1,422.1m<sup>2</sup>(지하 1층, 지상 2층)
- 세부 시설현황
  - 지하 1층: 기계실, 전기실
  - 지상 1층: 초·중·고급 목재체험실, 영상관, 전시홀, 사무실 등
  - 지상 2층: 상설전시실, 기획전시실, 유아휴게실 등
  - 야외시설: 카페테리아, 야외전시공간, 관경루(여민정) 등

- 그간 추진상황
  - 목재문화체험장 건축물 조성완료
  - 전시시설 제작·설치 완료
  - 내부보강 및 주변 조경공사 시행 중
- 위탁계획
  - 위탁자 선정방법: 제안공모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회 평가·선정
  - 위탁기간: 계약일로부터 3년
  - 위탁내용
    -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관리
    - 교육·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
    -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목재문화체험장 홍보
    - 기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
- 향후일정
  - 위탁운영 제안공모 공고: 2017. 7.
  - 민간위탁심의회 개최: 2017. 8.
  - 민간위탁 계약: 2017. 9.

#### **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- 본 동의안은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재미있게 목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, 각종 편의시설·전시실 등 목재문화체험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-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·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“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”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,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르면 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재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·단체에 3년간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